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7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민전·김용태·박상웅

주진우 • 박덕흠 • 박수민

김석기 • 인요한 • 김상욱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

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를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 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서울대학교</u>	제1조(목적) <u>서울대학교</u>
<u>병원을 설치하여</u> 「고등교육	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	
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②
때에는 <u>교육부장관</u> 의 인가를	<u>보건복지부장관</u>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	②
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	
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 이 임명	<u>보건복지부장관</u>
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	

- 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③ (생략)
-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
- 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 ⑦ (생 략)
- 략)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 ④ ~ ⑦ (생 략)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생 략)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 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u>(4)</u> -----
- ---보건복지부장관-----.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0조(대학병원장) ①·② (생 제10조(대학병원장) ①·② (현행 과 같음)
 - (3) -----
 - ---보건복지부장관-----
 - ④ ~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9조(감독) <u>교육부장관</u>은 대학 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 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
	<u>다.</u>
제	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u>보건복지부장관</u>
-11	
세	18조(결산서의 제출)
	<u>보건복지부장관</u>
제	19조(감독) <u>보건복지부장관</u>
제:	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u>.</u>